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인간은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존엄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과 배상의 기한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의 정신을 확인한다.

1910년 8월 29일 ^{정복}한일합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5일의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민족·국적·정치적 견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학대하였는데, 특히 최대 2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 어린 조선인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동원하여 전쟁중인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1994년 8월, 일본정부가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의 이동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북한, 대만, 필리핀 등지의 피해자 증인 ^이에 ^이서 일본군이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와 개인 학자에 의해 일본의 방위청 등에서 발견한 일본군의 공식문서가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이 어린 소녀를 상대로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조직적인 강간·유괴행위로 이는 명백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 중에 행해진 비인도적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비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책임이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제법률가위원회가 199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965년의 한·일간의 조약은 정부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1996년 제 52 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샌프

주요: 인도적 책임에 대해 미제각성.

ICJ, ILO, UN 인권위 위안부 문제

다지에 대한 인도적 책임 인정. 아시아의 문제: 인도적 책임 인정 필요.

란시스코강화조약이나 그 어떤 쌍무적 조약들도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를 다루지않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확인하며,

1995년 6월,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단호히 부정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비인도적 범죄인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특히 피해자, 피해국의 정부, 인권단체 등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국민기금'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도에 어긋나고 양국간의 국민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며

특히 여성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명예에 공격을 받아서는 안되며, 강간이나 강요된 매춘 혹은 어떠한 형태건 점잖지 못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시민간인보호협약,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근거하며,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비록 종전 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지만 과거 무수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금이라도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1996년 제 52 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조직된 위안부 체제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2. 2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의 위안소 및 기타 관련활동에 관한 모든 정부소유 기록 및 자료들을 완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마련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재판소'를 한시적으로 조직하며
4. 2차대전 중 위안부의 징집과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했던 범죄자를 가능한 한 색출하여 처벌할 것과
5. 피해자 개개인에게 서면을 통해 공개사과하며
6. 교과교육과정을 바로 잡아 이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